



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

2017. 7.



한국산림복지진흥원
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

「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」 공모

I 공모 개요

□ 공모 개괄

- 사업명 : 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2018년 12월
- 총 사업비 : 16,613백만원¹⁾
- 모집방식 : 일반공모
- 사업분야별 응모자격 및 지원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분야	사업시행자 및 응모대상	사업비	사업당 지원액
합 계	-	16,613	-
1. 나눔숲 조성사업	-	11,613	-
1)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100% 보조)		5,613	-
가) 실외환경 개선사업(100% 보조)	시·도 (사회복지시설 ²⁾)	3,113	개소당 1억원 내외, 최고 2억원까지
○ 사회복지시설 실외에 숲조성을 통하여 환경개선			
나) 실내환경 개선사업(100% 보조)	목재문화진흥회 (사회복지시설 ³⁾)	2,500	개소당 1억원 내외, 최고 2억원까지
○ 사회복지시설 실내에 목재를 이용한 환경개선			
2)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(총 사업비의 40%이상 자부담)	시·도 공익법인 ⁴⁾	6,000	개소당 5억원 내외, 최고 6억원까지
○ 교통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 조성			
2. 숲체험·교육사업(100% 보조)	비영리법인 산림학과개설대학 우선지원기관·단체 사회적 기업 ⁵⁾ 컨소시엄 ⁶⁾	5,000	사업당 5천만원 내외, 최고 1억원까지 ※ 컨소시엄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
○ 사회경제적 취약계층, 유아, 아동, 청소년 등의 정서 안정 및 신체 건강증진을 위한 숲체험·목재체험·유아숲체험교육			
○ 산림휴양문화체험,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			

※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원기관·단체의 경우 과년도에 지원받은 사업비(사업당) 내외에서 우선 지원 가능(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)

- 1) 사업비 규모는 복권위원회의 사업비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2) 시설운영주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인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함
 - 3)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시설운영주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인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함
 - 4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4호의 공익법인(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)
 - 5)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,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
 - 6) '컨소시엄'이란 숲체험·교육사업 응모자격을 갖춘 각 기관·단체·법인 등이 숲체험·교육사업에 공동참여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집합체를 말함.
- ※ 숲체험·교육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기관·단체가 응모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사업지원액은 참여기관·단체당 최고 1억원, 총 사업비 5억원 이내(사업제안서 제출 시 "컨소시엄 협약서"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)

□ 공모기간 : 사업 분야별로 상이

- 숲체험·교육사업 : '17. 7. 5.(수) ~ 8. 1.(화) 18:00
- 복지시설나눔숲(실내·실외)·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: '17. 7. 5.(수) ~ 8. 8.(화) 18:00
-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까지 온라인 접수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
□ 공모설명회 : '17. 7. 11(화),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(8층)

- 숲체험·교육사업 : 10:00 ~ 12:00
-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·실외),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: 14:00 ~ 16:00
※ 공모설명회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
Ⅱ 사업별 공모계획

1 공통 사항

□ 지원방향
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(장애인, 저소득층, 소년소녀가장, 다문화가정 등), 유아, 아동, 청소년 등에 대한 산림복지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기여

□ 응모제한 (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응모할 수 없음)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
-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안하는 기관·단체의 자체행사, 이윤추구·시설투자 또는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
- 국회·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
- 최근 3년간('15년~'17년) 연속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'16년에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사업
-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녹색자금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·단체

□ 심사·선정

○ 심사개요

-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‘사전심사위원회’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적합성·타당성·구체성 등에 대해 객관적 심사
- 산림청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서 ‘사전심사위원회’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하여 지원 대상 결정

○ 심사방법

-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·실외)’ 및 ‘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’은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병행
- ‘숲체험·교육사업’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

○ 선정기준

- 각 사업을 심사한 결과 순위(고득점순)에 따라 선정
- 제출된 신청서·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 및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
□ 가점·감점

○ 과거 3년간(‘14년~‘16년) 1회 이상 지원받은 녹색자금사업에 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(前 녹색사업단)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점수에서 가점·감점

- 3년 중 1회라도 “탁월”을 받은 경우 5점 가점, “미흡”을 받은 경우 5점 감점
- 3년 중 “탁월”과 “미흡”을 함께 받은 경우 또는 모두 “보통”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·감점 없음

○ 최근 3년간(‘15년~‘17년) 연속 지원받은 녹색자금사업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(前 녹색사업단)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점수에서 가점·감점

- ‘15년~‘16년에 지원받은 사업이 2회 연속 “우수”를 받은 경우 5점 가점, 2회 연속 “보통”을 받은 경우 5점 감점
- ‘15년~‘16년에 지원받은 사업이 “우수”와 “보통”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가점·감점 없음

□ 사업목적
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서안정 및 심신치유에 기여

□ 사업내용

- 교목·관목 등의 수목식재와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(옥상녹화 포함)

□ 총사업비 : 3,113백만원

□ 응모주체 : 시·도

- 사업신청서 작성 : 사회복지시설의 장
 - ※ 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외 환경개선사업)’과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 환경개선사업)’의 양쪽에 사업 신청할 수는 없으며, 양쪽에 신청시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

□ 응모방법

-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시·도에서 심사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
-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
- 시·도에서 사업신청서를 자체심사(현장확인 필수)한 후 심사결과 순위와 개별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시·도 사업제안서(총괄)를 제출
 - 시·도 사업제안서(총괄) 및 붙임서류는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인 '17. 8. 8(화) 18시까지 온라인 접수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 - 시·도에서는 “복지시설나눔숲(실외 환경개선사업)·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제안서(총괄)” 및 “사업별 심사결과 순위목록“을 작성하여(직인 포함) 한메일(kgpa@hanmail.net)로 별도 제출
 - ※ 시·도의 자체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별도 통보 예정임

- 시·도 사업제안서(총괄) 및 붙임서류(미제출 시 자격조건 미달로 처리)

구분	유의사항
사업제안서(총괄)	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(시·도)
사업신청서	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(사회복지시설의 장)
복지시설신고증	관할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
법인설립허가증	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 관할부처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한함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
부동산등기부 등본	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(옥상녹화의 경우)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·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소유일 것
개인정보동의서	원본은 우편으로 진흥원에 제출
구조안전진단보고서	옥상녹화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

□ 지원조건 및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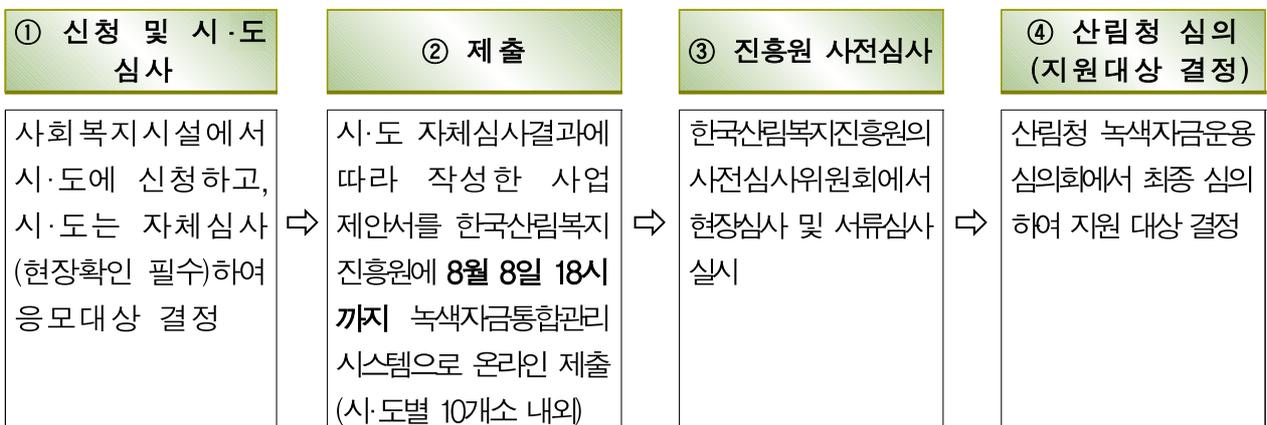
지원조건	녹색자금 지원액	응모 개소수
녹색자금 100%보조 (자부담 없음)	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억원 내외, 최고 2억원까지	시·도별로 10개소 내외

※ ① 명칭은 「○○(시·군·자치구)○○(시설명) 나눔숲」으로 합니다.

② 응모주체는 시·도이며,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·도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시·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③ 사회복지시설에서 '사업신청서'를 작성할 때 사업비 산출은 「별첨2. 사업비 편성 지침」의 <참고1> 복지시설나눔숲(실외 환경개선사업) 사업비 산출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응모 및 선정 절차



□ 심사기준

- 사후관리 계획의 지속성 및 구체성
- 숲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의 선행 여부(선정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)
-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
- 접근성·개방성·이용성·재정자립도
- 전체 사업비 중 식재비 비중 등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
-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
-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(총괄)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
 - ※ 사업제안서(총괄)에 「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□ 선정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)

- 과거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(실내·실외)을 조성한 사회복지시설
-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용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,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시설(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을 정지·취소할 수 있습니다)
-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(옥상녹화의 경우)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(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법인)의 소유가 아닌 경우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
-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외 환경개선사업)’과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 환경개선사업)’에 양쪽으로 신청한 사업
-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외 환경개선사업)’이 불가한 토지(등기부등본상 전답 등)

□ 사업시행자 : 시도

□ 사업목적

- 사회복지시설의 실내(바닥·벽재 등)에 목재(창호와 같이 목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목재 사용가능 ; 이하같음)를 이용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면역력 증강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

□ 사업내용

- 복지시설의 이용자 특성과 공간 특성에 따른 실내 목재환경 조성

□ 총사업비 : 2,500백만원**□ 응모자격**

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이 소유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

□ 응모주체 : 사회복지시설의 장

- ※ 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외 환경개선사업)’과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 환경개선사업)’의 양쪽에 사업 신청할 수는 없으며, 양쪽에 신청시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

□ 응모방법

-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 '17. 8. 8.(화) 18시까지 온라인 신청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
- 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(미제출 시 자격조건 미달로 처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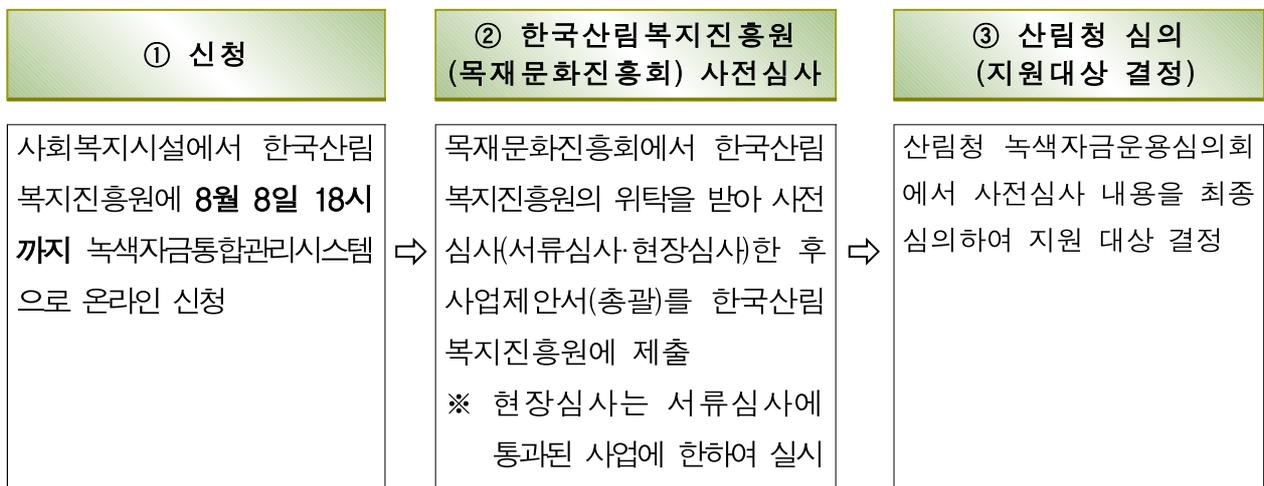
구분	유의사항
사업신청서	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(사회복지시설의 장)
복지시설신고증	관할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
법인설립허가증	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 관할 부처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한함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
부동산등기부등본	사업대상 건물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가·지자체·공공 기관·법인의 소유일 것
개인정보동의서	원본은 우편으로 진흥원에 제출
건축물대장	건축물 면적 및 준공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건축물 대장 제출

□ 지원조건 및 규모

지원조건	녹색자금 지원액
녹색자금 100%보조 (자부담 없음)	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억원 내외, 최고 2억원까지

※ 사업명칭은 「○○(시·군·자치구)○○(시설명) 환경 개선사업」으로 합니다.

□ 응모 및 선정 절차



□ 심사기준

-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
- 사업내용의 필요성과 개선계획의 적정성·타당성
- 유지·관리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

※ 개별 사업신청서에 「구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□ 선정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)

- 과거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(실내·실외)을 조성한 사회복지시설
-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용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,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시설(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을 정지·취소할 수 있습니다)
- 사업대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(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법인)의 소유가 아닌 경우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
-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외 환경개선사업)’과 ‘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 환경개선사업)’에 양쪽으로 신청한 사업
- 해당 대상지 건물이 공모일 기준 준공된지 10년 이하인 기관(준공일이 2007년 7월 4일 이후인 기관)
-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생활시설(신고증 수용인원 기준)

□ 사업시행자 : 목재문화진흥회

- 목재문화진흥회의 역할 :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사업제안서(총괄)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

□ 사업목적

- 교통약자층(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)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
□ 사업내용

- 무장애산행을 위한 목재데크 설치, 노면을 포장·정비하고 체험·학습 및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마다 쉼터·편의시설 설치

□ 총사업비 : 6,000백만원

□ 응모주체 : 시·도, 공익법인

- 사업신청서 작성 :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, 공익법인

□ 응모방법

- 응모주체가 시·도인 경우
 -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·도에 제출
 - 시·도에서 사업신청서를 자체심사(현장확인 필수)한 후 심사결과순위와 개별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사업제안서(총괄)를 제출
 - 사업제안서(총괄) 및 붙임서류는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 '17. 8. 8(화) 18시까지 온라인 접수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 - 시·도에서는 “복지시설나눔숲(실외 환경개선사업)·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제안서(총괄)” 및 “사업별 심사결과 순위목록”을 작성하여(직인포함) 한메일(kgpa@hanmail.net)로 별도 제출
- ※ 시·도의 자체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별도 통보예정임

○ 응모주체가 공익법인인 경우

- 공익법인이 사업제안서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직접 제출
-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제안서(총괄) 및 붙임서류는 「녹색자금통합 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 '17. 8. 8(화) 18시까지 온라인 접수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
□ 지원조건 및 규모

지원조건	녹색자금 지원액	응모 개소수
총 사업비의 40%이상 자부담	개소당 5억원 내외, 최고 6억원까지	시·도별 2개소 이내, 공익법인은 1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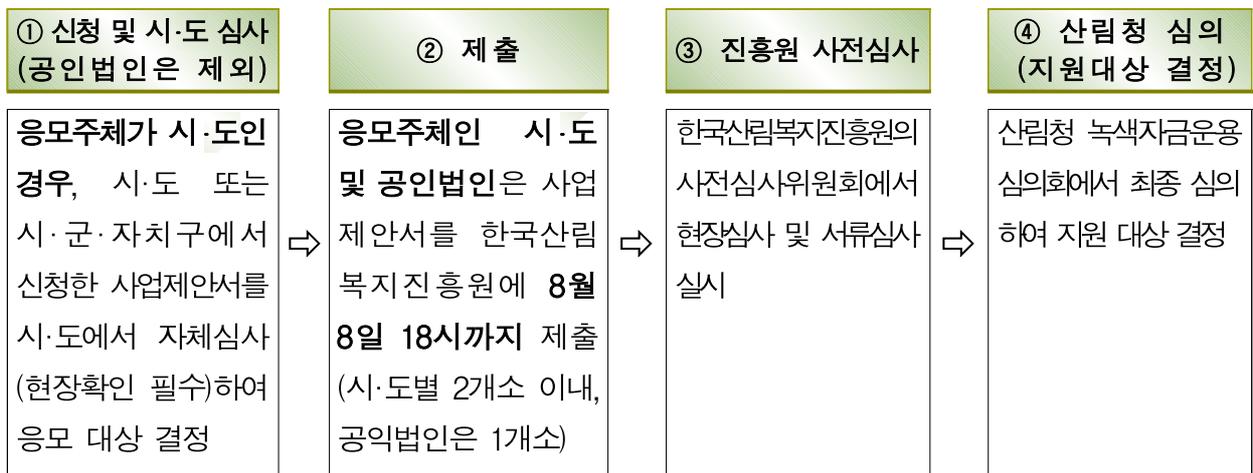
※ ①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

- 응모주체가 시·도인 경우 : ○○(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명) ○○(지역명) 무장애나눔길
- 응모주체가 공익법인인 경우 : ○○(공익법인명) 무장애나눔길

②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(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, 공익법인)가 동일해야 합니다. 다만,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다른 지자체·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(개인 소유 토지,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소유의 토지에는 사업시행 불가)

③ 녹색자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60% 이하이며,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4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약, 사업선정 후 사업년도 본예산에 자부담(40%이상)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됩니다.

□ 응모 및 선정 절차



□ 심사기준

- 가급적 급경사지가 아니며, 시설에 따른 훼손이 적은 곳
- 교통약자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·주차장 및 대중교통 등 교통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곳
- 지반이 안정되고 낙석의 위험성이 없는 곳
- 대상지 선정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
-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
-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
- 40% 이상의 자부담 반영여부
-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여부
- 사후관리 계획의 지속성·구체성 등

※ 사업제안서에 「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□ 선정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)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
- 사업대상지에 각종 개발계획 등 타 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되어 있는 지역
- 기존에 설치된 데크로드의 보수공사가 주요 공종인 사업

□ 사업시행자

-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의 시행자 : 시·도지사
- 공익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의 시행자 : 공익법인의 장

□ 사업목적
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, 아동, 청소년 등이 숲체험·목재 체험을 통해 정서 안정, 신체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체험교육
- 산림문화 확산 및 산림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휴양문화 체험, 전문가 육성, 국제 교류·협력에 기여하는 휴양문화

□ 사업내용

<체험 · 교육>

- 다음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숲치유, 숲체험, 목재체험사업
 - 자존감·정서안정·행동발달
 - 학습능력 향상, 인성 형성, 신체 발달, 면역력 증가
 -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중독 등의 예방
 - 성인을 위한 스트레스·불안감 해소, 우울증 완화
 - 기타 산림분야 전문 인력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서 안정, 신체건강 증진에 기여

<휴양 · 문화>
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·아동·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산림휴양·문화, 목재문화 등의 체험형 행사
-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

□ 총사업비 : 5,000백만원

□ 응모자격

- 비영리법인(특수법인, 법인인 학회 포함), 산림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, 우선지원기관·단체,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,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, 컨소시엄

□ 응모방법

-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 '17. 8. 1.(화) 18시까지 온라인 신청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 - 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(미제출 시 자격조건 미달로 처리)

구분	유의사항
사업제안서	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(사회복지시설의 장)
법인설립허가증	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 관할 부처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한함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
개인정보동의서	원본은 우편으로 진흥원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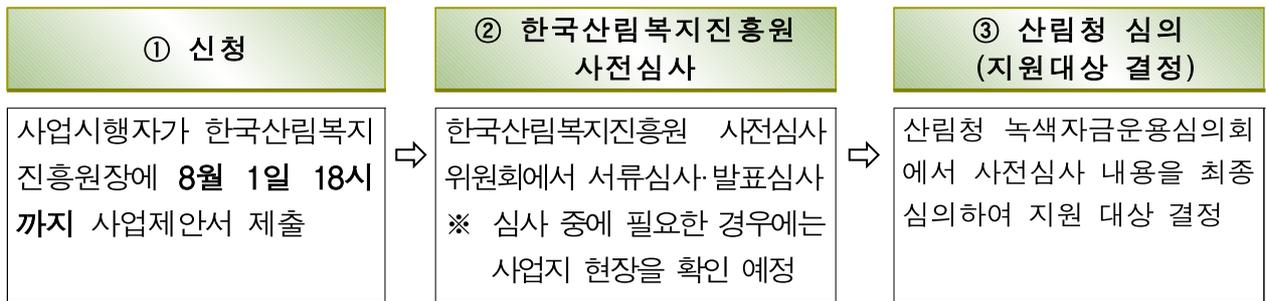
※ 산림학과 개설대학 및 우선지원 기관·단체, (산림형 예비)사회적 기업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

□ 지원조건 및 규모

지원조건	녹색자금 지원액
녹색자금 100%보조 (자부담 없음)	사업당 5천만원 내외, 최고 1억원까지 컨소시엄은 최고 5억원까지(참여기관당 최고 1억원)

- ※ '컨소시엄'이란 숲체험·교육사업 응모자격을 갖춘 각 기관·단체·법인 등이 숲체험·교육사업에 공동참여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집합체를 말합니다.
- ※ 숲체험·교육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기관·단체가 응모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사업지원액은 참여기관당 최고 1억원, 총 사업비 5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사업제안서 제출 시 "컨소시엄 협약서"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)
- ※ 숲체험·교육사업 중 <체험·교육>의 경우,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·아동·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며, 수혜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급적 교육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※ 숲체험·교육사업 중 <휴양·문화>의 경우, 수혜대상에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포함되거나 산림문화 확산 및 산림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, 구체적인 사업목적, 대상, 모집방법, 규모, 횟수 등이 사업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.
- ※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우선지원기관·단체의 사업당 지원규모는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업비 내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※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허가증, 인증서, 지정서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응모자격의 기한이 2017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없습니다.

□ 응모 및 선정 절차



□ 심사기준
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·아동·청소년에게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,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이 높은 사업
-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사업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사업
- 단체의 설립 목적과 적합성 여부 및 조직체계 등 추진역량
- 모집대상·사업목표에 맞는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여부
- 사업 후 사업효과 목표달성을 입증한 성과측정방법의 포함여부
- 참가자 모집방법 및 선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, 사업추진의 실효성 여부

□ 가점·감점

- '16년도에 지원받은 숲체험·교육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의 평가결과가 1위~3위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선정 (단, '17년도 공모사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)
-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관·단체의 경우 2점 가점
※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첨부 시에만 가점 인정
-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강사진 투입 계획을 수립한 기관·단체의 경우 2점 가점(단,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가점과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)
※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관과 강사 투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
- '17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기관·단체(컨소시엄의 대학 등 포함)는 심의를 통해 2점 이내에서 감점 조치

□ 선정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)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
- 최근 3년간('15년~'17년) 연속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'16년에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사업

□ 사업시행자

-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법인·기관·단체·대학·기업 등

IV 행정사항

□ 공모기간

- 숲체험·교육사업 : 2017. 7. 5.(수) ~ 2017. 8. 1.(화) 18시까지
-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(실내·실외),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: 2017. 7. 5.(수) ~ 2017. 8. 8.(화) 18시까지

□ 응모방법

- 「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gfund.fowi.or.kr>)」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시한까지 온라인 접수(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)

□ 제출서류

- 사업별 제안서 및 별첨 증빙서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□ 선정결과 통보

- 2017년 10월 중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개별 통지(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□ 유의사항

- 사업제안서에 제안기관·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거나, 제안기관·단체장 직인의 공문이 첨부되어야 유효합니다.
- 사업별 제안서 양식 및 증빙, 작성요령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「별첨 3 녹색자금(사업비) 지원조건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중도에 포기·탈락한 사업이 발생하면 차순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 - * 한국산림복지진흥원(042-719-4071~5), 목재문화진흥회(02-3463-9632)

2017. 7. 5.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